

## 中國 壯族의 喪葬禮 習俗에 관한 試論\*

全 英 蘭\*\*

<目 次>

- |                       |                |
|-----------------------|----------------|
| I. 서 언                | IV. 壯族의 喪葬禮 習俗 |
| II. 壯族의 淵源과 지리적 환경    | V. 결 언         |
| III. 壯族 喪葬禮 觀念의 변천 과정 |                |

### I. 서 언

현재 중국에는 크게 漢族을 포함해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이른바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한족의 집요한 동화정책으로 주류문화인 중원문화에 흡수 융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상당부분 그들 고유의 다양한 문화습속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의식인 관혼상제의 예는 더욱 그러하다.

민족 고유의 관혼상제 의식, 특히 상장례 습속은 일반적으로 그 민족이 처한 자연환경, 생산방식, 생활습관, 종교 및 신앙, 의식형태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중국 소수민족의 경우 삼림 속에서 수렵생활을 하던 민족은 樹葬 혹은 風葬을 했고, 물가에 사는 일부 민족은 水葬을 했으며, 유목민족은 野葬을 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민족은 火葬을, 또

\* 본 논문은 200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大邱大學校 中國語中國學科 教授

어떤 민족은 鳥葬을 하는가 하면, 다수의 농업민족은 土葬을 하고 있다.<sup>1)</sup> 이처럼 장례습속은 인간생활의 환경적 특징은 물론, 그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의례형식이다. 유목민과 정착민의 장례습속이 다르고,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喪葬습속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듯이, 민족의 이동과 성쇠, 문화적 교류,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그것은 변천을 거듭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 지역일지라도 민족에 따라 장례습속이 다르고, 동일민족일지라도 사회계층에 따라 장례방식이 다르며, 같은 토장일지라도 사회구조에 따라 單葬과 合葬제도가 있듯이 장례습속은 또 당시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고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壯族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 및 타 민족과의 문화적 교류와 그 흥망성쇠에 따라 장례습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럼으로써 장족 고유의 민족 문화와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본다.

장족은 인구도 많고 거주 분포지역도 넓어서 지역마다 상장례 습속도 다르므로 중국에서는 각 지역의 상장례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지만,<sup>2)</sup> 본고에서는 장족의 전반적인 상장례 습속을 포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嚴汝嫻·劉宇, 《中國少數民族婚喪風俗》(제1판; 北京: 商務印書館, 1996), 156쪽; 萬建中, 《圖文中國民俗·喪俗》(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4), 4-5쪽.
- 2) 중국의 논문으로는 黃浩邦, <大化縣六也鄉壯族喪葬調查>, 《廣西民族學院學報》, 1997년 12월.  
龍符, <雲南壯族民間傳統喪葬祭祀習俗>, 《文山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제16권 제3기, 2003.3.  
郭立新, <榮耀的背后: 廣西龍背壯族喪葬儀式分析>, 《中南民族大學學報》 제25권 제1기, 2005.1. 등이 있다. 한편 장족에 대해 우리 학계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2008년 한국민족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연구》에 3편의 논문이 있다. 하지만 장족의 관혼상제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  
김재원, <중국 광서(廣西)의 소수민족; 장족(壯族)사회 탐방: 깊은 산속 계단 밭 일구며 살아가는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 《민족연구》, 2008.  
김재원, <중국 광서(廣西)의 소수민족; 중국광서 장족자치구 민족탐구: 광서 장족자치구의 소수민족 개황>, 《민족연구》, 2008.  
연구원자료, <중국 광서장족민족자치현 소개>, 《민족연구》, 2008.

## II. 壯族의 淵源과 지리적 환경

### 1. 族稱과 분포

장족은 중국 廣西, 廣東(嶺南)지방의 토착민족이다. 顧炎武는 《天下郡國利病書》에서 “瑤는 남쪽의 오랑캐이고, 僮은 옛 越나라 사람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秦漢 및 그 이전에는 장족의 선조들을 西甌와 駱越이라 칭했다. 東漢시기에서 隋唐에 이르기까지는 烏滸, 俚僚 혹은 俚이라 불렀다. 宋代부터 僮이라 부르기 시작했다.<sup>4)</sup> 明清대 이후 僮, 徭, 土라고 칭하는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근대에 와서는 장족이 대표적인 족칭이 되었다. 그밖에도 依人, 沙人, 僚人 등등으로 불리어 지기도 했다. 장족의 인구가 증가하고 분포 지역이 확대되어 그 족계가 번잡해짐으로써 각지의 장족은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즉 布壯, 布依, 布沙, 布僚, 布僮, 布曼, 布隴 등등 무려 40여 종의 이름이 사용되었다.<sup>5)</sup>

근대 이후 모든 장족을 총체적으로 僮(壯)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민족명의 정리과정에서 광서, 운남, 광둥 등 성내에 있는 각종 僮人들은 스스로 僮族이라 부를 것을 원했다. 1965년 10월 12일 국무원은 <僮族 및 僮族자치지방의 명칭 변경 문제에 관해 광서 동족자치구인민위원회, 운남성인민위원회, 광둥성인민위원회에 내린 답변><sup>6)</sup>을 통해 僮族의 ‘僮’자를 동음(Zhuang)이며 건장하고 튼튼하다는

3) “瑤乃荆蠻, 僮則舊越人也.”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130 <廣東七>(圖書集成局鉛印, 光緒27年中秋二 林齋藏版); 方素梅, 《近代壯族社會研究》(제1판; 南寧: 廣西民族出版社, 2002), 1쪽에서 재인용.

4) 明清시대에는 민족차별사상의 영향으로 대부분 ‘犬’자 변의 ‘獯’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5) ‘布’는 ‘壯語’로 ‘사람’(人)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布壯’은 ‘壯人’이라는 뜻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布’는 족칭의 앞에 붙이는 민족의 성분을 표시하는 관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6) <關於更改僮族及僮族自治地方名稱問題給廣西僮族自治區人民委員會, 雲南省人

의미를 가진 ‘壯’으로 바꾸었다. ‘僮’은 多音字로 아이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tong’으로 읽고, 장족을 칭할 때는 ‘zhuang’로 읽어야 하여, 잘못 읽히기도 쉬우므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淸 중엽 이전까지만 해도 장족의 분포는 상당히 광범했다. 명대의 기록에 의하면 僮人是 “獯人, 五嶺以南皆有之, 與獠雜處”<sup>7)</sup>라고 하여 5령 이남에 장족이 널리 거주하면서 요족과 섞여 살았다고 하였다. 장족은 元明代 이래 광서의 전지역, 광동의 서남부, 雲南의 동남부, 貴州의 서남부에 모두 대량으로 거주하였다.

淸 중엽 이후, 특히 청말 중화민국 초기 장족지역에 대한 한족의 대량 유입으로 한족에 동화되면서 장족은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비록 이들 장족 거주 지역에서 僮語를 들을 수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僮人의 성씨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족의 혈통이 보존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sup>8)</sup>

청 초엽인 1753년 광서의 인구는 197만 6천여 명이었고, 1820년에는 741만 6천여 명으로 증가되었다.<sup>9)</sup> 100년 안에 무려 3배나 불어났다. 그 중 장족의 인구는 광서 서쪽지역 장족 인구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기록에 의하면 1713년 장족의 집중 거주지역인 柳州, 慶遠, 思恩, 泗城, 南寧, 太平, 鎮安 등의 장족 인구는 약 30만이었지만, 1820년에는 이들 지역의 인구는 무려 362만 8천여 명이 되었다.<sup>10)</sup> 물론 당시 한족이 이들 지역에 많이 유입되긴 했지만 역시 주류는 장족인 점을 감안할 때 급속한 증가라고 보겠다. 雲南, 廣東, 湖南, 貴州省 등의 장족인구에 대해서는 자료의 결핍으로 추산하기 어렵지만 학자들은 근대 이전 장족의 인구는 350만 전후로 추산하고 있다.<sup>11)</sup>

民委員會, 廣東省人民委員會的批復>

- 7) 田汝成, 《炎徼紀聞》4 (제1판; 북경, 중화서국, 1985), 61쪽.
- 8) 徐松石, 《粵江流域人民史》(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41), 155쪽.
- 9) 葛劍雄 編, 《中國人口史》5 (제1판;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211쪽.
- 10) 위의 책, 210-211쪽.
- 11) 張聲震 主編, 《壯族通史》下(제1판; 北京: 民族出版社, 1997), 817-818쪽.

현재 壯族은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다. 모두 1,600만 정도며,<sup>12)</sup> 대부분 중국의 남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광둥성 連山壯族瑤族自治縣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운남성 文山壯族苗族自治州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광서장족자치구 北部灣에서부터 북쪽의 귀주성 從江縣 일대에 이르는 지역과 서남쪽은 월남과 접하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장족 인구의 99.73%가 이들 지역에 살고 있다. 그 중 광서장족자치구에 1,500여 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장족인구의 93.7%에 달하며, 광서자치구 인구의 33.6%를 점한다. 百色, 河池, 南寧, 柳州 등 4개 지역의 장족 인구는 전체 광서 장족 인구의 91%를 점한다. 운남성의 경우 문산장족묘족자치주에 87만 여명의 장족이 분포되어 있고, 운남성의 기타지역에 13만여 명이 살고 있다. 또 광둥성 장족요족자치현에 약 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밖에, 귀주성에 1만 6천여 명, 신강위구르자치구에 약 5천여 명, 그리고 호남성의 江華瑤族自治현과 四川省에 각각 5천여 명과 3천여 명이 분포되어 있다.<sup>13)</sup>

장족인구의 주요 거주 지역은 농촌이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90% 이상이 농민이다. 그리고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 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sup>14)</sup>

## 2. 장족 거주지의 자연과 지리적 환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족은 중국의 남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족의 거주 지역은 시중 내륙지역과 서남지역이 연결되는 지역 및 서남지역에서 남쪽 바다로 잇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장족의 거주 지역은 대체로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은 지역

12) 2005년 현재 장족이 전체 인구는 16,178,811명이다.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編, 《2005中國統計年鑑》(제1판;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5), 44쪽.

13) 張聲震 主編, 앞의 책上, 1쪽.

14) 方素梅, 앞의 책, 38-39쪽.

으로 서북에서 동남으로 경사가 진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都陽, 六沼, 勾漏, 鳳凰 등의 산맥이 있고, 左江, 右江, 郁江, 紅水河, 龍江, 柳江, 桂江, 盤龍河 등의 하천이 중횡으로 흐르고 있다. 강과 산맥 사이에는 평원과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산맥의 앞 및 계곡과 분지의 언저리에는 광활한 구릉지대가 펼쳐 있다. 광서와 운남, 귀주와 연결해 있는 지역의 서쪽에는 해발 1,000~1,200미터의 고원 산지다. 산지와 구릉이 장족 거주지역의 주축을 이루며, 그 때문에 광서는 고래로부터 “八山一水一分田”이라하여 주로 산지이며 약간의 물이 있고 밭은 아주 적은 곳이다<sup>15)</sup>

장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 아열대와 남 아열대 기후구에 속한다. 태양 열이 풍부하고 우량이 충분하며 서리 내리는 기간이 짧아 거의 일 년 내내 식물이 성장하는 시간이 길다. 하지만 장족 거주지역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냉온기류의 교차가 빈번하고 기후가 복잡 다변하며 가뭄과 장마·저온·태풍·폭우·우박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그 중 가뭄과 저온은 농업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장족 거주지역의 자연자원은 아주 풍부하다. 식물자원의 경우, 운남, 광둥과 광서의 식물 종류의 다양함은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상당부분이 장족 거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벼, 옥수수,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사탕수수, 계피나무, 붓수나무(八角), 동백나무, 기름 오동나무(油桐), 차, 삼(麻), 삼칠초(田七) 등 경제작물, 그리고 여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유자, 감귤 등 과일작물 등이 장족의 거주 지역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다. 동물자원의 경우 장족거주 지역에는 靈長類, 獸類, 禽類, 鳥類, 兩棲類와 파충류 동물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 중 원숭이, 사슴, 너구리, 산돼지, 호랑이, 곰, 뱀, 자라, 蛤蚧 등 야생 동물은 상당히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근대 장족지역의 대외무역품이 되었다. 광산자원의 경

15)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토지 측량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광서에는 산지가 토지면적의 77.2%를 점하고, 평원은 20.9%며 하천의 수면 면적이 1.9%다. (謝之雄 主編, 《廣西壯族自治區經濟地理》(제1판; 南寧: 新華出版社, 1988), 7쪽.

우 근 100여 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고, 그 중 망간, 주석, 안티몬, 흑연 등의 매장량은 전국에서 수위에 속하며 장족 거주지가 그 주요 분포 지역이다.

자연 및 지리적 환경은 인류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장족거주 지역은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 있어서 많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자연자원 등은 사회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동시에 불리한 조건도 있어 경제문화의 더 나은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 및 그것이 조성한 주요한 부작용은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sup>16)</sup> 하나는 각 지역의 기후, 지형, 자연자원 등 자연 및 지리적 환경의 바탕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히 광서 서부, 운남, 광서 동부지역은 그 차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장족 내부 및 장족과 한족 간의 경제적 관습 및 생활습관 내지 문화가 상당히 다르게 형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광서 서부와 운남, 귀주 등지의 장족 거주 산지 지역은 그 상당 부분이 돌산 지역으로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렵고, 빈번한 가뭄과 재해, 질병, 도적의 출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사회가 폐쇄되고 단절되어 있어 정치, 경제 및 문화 발전이 더디었다.

### III. 壯族 喪葬禮 觀念의 변천 과정

장족의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사람의 죽음은 영혼이 형체를 떠난 결과이며, 사람의 육신은 비록 죽더라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여 살아있는 親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시신에 대한 처리가 지극히 신중했다. 길한 것을 쫓고 재앙을 피한다(趨吉避凶)는 가치관념 하에 형성된 장족의 상례와 장례의 예속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이익에 중점을 둔 극히功利주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혼령에 대해 두려워하고, 비

16) 方素梅, 앞의 책, 7쪽.

위를 맞추고, 경원하며, 심지어 도사나 무당이 귀신에게 빌어 유혹하여 내쫓고 진압하는 것이 고대 장족 상례 의식의 주안점이었다.

장족 및 그 선조들은 남편이 죽은 여인을 ‘귀신의 아내(鬼妻)’라 부르고 감히 그녀와 결합하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만이 홀로 거주케 했다. 이는 귀신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멀리하고자 한 분명한 하나의 예다. 또한 解縉 등이 편찬한 《永樂大典》 등의 서적들은 모두 장족 및 그 선조들은 상사가 있으면 서로 모여서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마음껏 술을 마시며 즐거이 춤을 추지 않으면, “북을 치며 즐기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예를 치렀다.”고 기록했다.<sup>17)</sup> 그것의 목적은 즐거운 노래를 함으로써 시신을 즐겁게 하고(娛屍), 고함과 아우성의 위세로 무턱대고 나쁜 짓을 하는 악귀(망자의 혼)를 내쫓고자 한 것이다.

죽음은 비통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고대 장족은 상사에 봉착하여 냉정히 처리하지 않고, 열광적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漢族의 전통 상례 습속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12세기 광서에 관료가 되어 부임한 한족 周去非는 이러한 경황을 보고 크게 놀라하면서 광서인들은 즐거운 경사가 있을 때 흰 옷을 입는데, 상사 때에도 역시 흰색의 옷을 입었다고 말했다. “남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웃들이 그 집에 모여 밤낮으로 북치고 피리를 부는데, 상복을 입는 사람들도 흰색의 두건 위에 조금의 붉은 끈을 매어 표시를 하였다. 일찍이 옛사람의 시를 들은 바 있는데, 피리소리와 북소리는 근심스러운 일과 즐거운 일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의관은 길흉인을 구분하기 어렵더라 하였으니, 그 말이 맞다”<sup>18)</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족은 한족과는 상당히 다른 장례습속을 갖고 있다. 이는 문화와 가치

17) “以鼓樂飲酒食肉爲禮.” 解縉等, 《永樂大典》一 卷2339(北京: 中華書局, 1994), 967쪽.

18) “南人死亡, 鄰里集其家鼓吹晝夜, 而制服者, 反於白巾上綴少紅線以表之. 嘗聞昔人詩云, 簫鼓不分憂樂事, 衣冠難辨吉凶人, 是也.” 周去非, 《峽外代答》二卷7 (제1판; 북경: 중화서국, 1985), 75쪽.

정향이 다른데서 연유한 것이라 보여 진다. 고대 한족의 장례습속은 그 근본이 세상을 떠난 망인을 애도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고대 장족의 장례습속은 그 요지가 趨吉避凶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혼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족은 친족이 사망하면 素食을 하고 3년간 묘소를 지키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장족은 사람이 사망하면 “복을 치며 애도하면서도 효자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아니하였다.”<sup>19)</sup>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수레를 밀고 술을 거나하게 마신 뒤에 시신을 야외로 운반하여 매장했다. 또한 설사 지친의 자녀일지라도 대문 밖에 까지 나가서 운구를 보내지는 않았다.

고대의 장족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은 일체의 모든 불행, 신체적 손상·질병·노쇠·사망, 심지어는 가세의 빈곤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등 모두를 귀신의 탓으로 돌렸다. 송대 이전(10세기 이전) 장족의 풍습은 백성들이 집안이 가난하면 묘지가 불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관을 파헤쳐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 이를 ‘出祖’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도사나 무당의 주재 하에 귀신을 쫓아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다. 많은 재물을 들여 장례를 호화롭게 하고 크게 소리를 냄으로써 귀신을 내 쫓았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금방은 그 혼령이 옛 집을 그리워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았을 때 좋아하던 물건들에 대하여 혼령이 그리워하는 정을 지우기 위해 사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전부 태워 버렸다. 그가 살던 집까지도 태웠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았기 때문에 사자의 집을 태워도 문제는 없었다. 10세기 이후 ‘不落夫家’<sup>20)</sup>와 ‘産翁制’<sup>21)</sup>가 보편적인 예의제도가 되고, 장족 여인들은

19) “打鼓助哀, 孝子尤無悲泣.” 解縉等, 앞의 책, 967쪽.

20) ‘不落夫家’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명절이나 남편이 일부러 데리러오지 않을 때에는 시가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풍속은 장족뿐만 아니라 苗족, 瑤족, 黎족, 侗족 등 여러 민족에서도 있었다. 대개의 학

결혼 후 남편을 따라 거주하였기 때문에 부자간의 정은 두터워지고 조상 숭배 정신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갔다. 그래서 장족가정에는 가신에게 향불을 피우는 ‘家鬼香火堂’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2세기 말 周去非는 《峴外代答》卷12에서 “장족은 ‘집 귀신’은 바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혼령으로 보고, 가장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매 가정마다 모두 대문의 오른 편에 하나의 ‘家鬼巷’을 설치하고 그 오른 쪽의 벽 위에 밖으로 통할 수 있는 2~3치(寸)의 구멍을 만들어 귀신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을 ‘鬼路’라 불렀다.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은 손님을 귀로와 가까운 곳에 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귀신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명절에는 모두 ‘鬼巷’ 옆에 제수를 차려 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자손들은 도사나 무당을 불러 3일 낮 밤으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함으로써 귀신을 즐겁게 했다. 이 때 ‘家鬼巷’에는 밖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 이외, 신을 모시는 함은 물론 신위와 관계되는 어떠한 표지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1585년 완성된 《賓州志》에 의하면 장족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신위도 모시지 않으며 질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2)</sup>

이러한 고대 장족의 장례 및 조상에 대한 관념은 한족의 문화와 접촉하고 그것에 동화됨으로써 장족 가정의 ‘家鬼巷’은 점차 사라지고, 안채 한 가운데 방의 뒤쪽 벽 중심에 ‘家鬼香火堂’을 설치하고 명절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신의 출입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자들은 이 풍속은 결혼 후 처가에서 살던 제도로부터 시댁에서 살게되는 제도로 바뀌는 과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21) ‘産翁制’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아이를 낳는 것처럼 누워서 시늉을 하고(男人分娩),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편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누워서 몸조리를 하고(男人坐月), 대신 아내는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에게 산모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풍속을 말하는데, 이때 이 남편을 ‘産翁’ 혹은 ‘産公’이라 불렀던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마도 결혼 후 남편의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남자는 아이까지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남자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22) 白耀天, <壯族喪葬禮儀述論>, 《廣西民族研究》, 1993년 제4기, 7쪽.

‘家鬼香火堂’의 옆쪽에 하나의 작은 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적지 않는 장족 거주지역의 가정에는 안채 가운데 방에 정문 이외에 작은 옆문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대에 신의 출입을 위해 마련했던 출입구의 유습이다. 고대의 풍습에 의하면 ‘가귀향화당’은 집안의 중요한 곳 중 하나로 외부인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아니 되었다. 설사 부인이라 할지라도 시집을 때 단 한 차례 ‘가귀향화당’에 들러 인사를 드릴 뿐, 이후에는 쉽게 드나들 수 없었다. 《嶺外代答》에 의하면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이 공격하여 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부인 역시 성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외래객과 같이 취급했다. 다만 부인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집의 주인이 되어 비로소 귀신으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가귀향화당’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고대 장족들은 망자의 사후 첫 3년은 가족들과 생전에 좋아하던 물건에 대한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혼령이 집을 떠나려 하지 않고, 5년 후에는 집 안의 땅 밑으로 들어가며, 만 9년에야 집을 떠나 ‘族鬼壇’이나 ‘村鬼壇’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대 장족 거주지역의 각 마을에는 모두 ‘촌귀단’을 만들었다. 만약 마을의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여러 가지 다른 성씨 집안이 있으면 ‘촌귀단’을 만드는 이외에, 각 씨족마다 그들의 ‘족귀단’을 만들어 사망한 조상들로 하여금 그곳에 몸을 감추도록 하였다. 1950년대 까지도 광서자치구의 서쪽과 광동성의 동남 지역의 많은 장족 촌락에는 그러한 것이 많았던 것으로 전한다. ‘촌귀단’이나 ‘족귀단’은 그 규모나 모양이 일정치 않았다. 어떤 것은 흙을 이겨서 만들었고, 어떤 것은 여러 조각의 돌로 하나의 작은 굴을 만든 것도 있었다. ‘촌귀단’과 ‘족귀단’은 아주 신비한 곳으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 말만 해도 무서워하고 청년들도 감히 그곳에 쉽게 드나들지 못하였으며, 며느리와 외래인의 출입을 용인하지 않는 곳이었다. 매년 명절 제사 때에는 제주가 성년 남자를 거느리고 참배했으며, 도사나 무당이 그 행사를 주재했다.<sup>23)</sup>

23) 아직까지도 운남성과 광서장족민족자치구 서쪽 일부 지방의 장족들은 이러한 풍습을 지키고 있다.

훗날 중국 한족의 ‘社壇’(土地神廟)이 장족거주 지역에 전파되어 ‘촌귀단’ 또는 ‘족귀단’과 ‘사단’을 함께 만들어 혼용하게 되자, ‘촌귀단’과 ‘족귀단’의 신성성은 점차 사라져갔다. 또 그 뒤에는 ‘사단’과 ‘촌귀단(또는 족귀단)’은 주객이 전도되어 장족의 ‘촌귀단(족귀단)’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고, 그것을 모두 ‘사단’, ‘토지신묘’ 또는 ‘토지묘’라고 불렀다. 그것은 원래의 ‘조상신’이 맡았던 건강과 평안을 지키고 가족과 재산을 번영케 하던 의무를 책임져야 했을 뿐 아니라, 농작물을 보호하고 풍작을 보증하는 의무를 져야 했다. ‘촌귀’와 ‘토지신’의 기능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광서자치구의 大新縣 일대의 장족 거주 촌락의 입구에는 모두 토지신묘가 지어져 있다. 사람들은 ‘토지신’은 그곳에 가장 최초에 산 주민으로, 사후에 신이 된 촌민의 조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이들 ‘토지신’은 ‘촌귀’에서 변화 발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토지신’은 자신들의 조상 이외에, 그들의 논밭 가운데 지어 놓은 ‘神農廟’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농작물의 성장과 풍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족에게는 원래 ‘鬼’의 개념은 있었지만, ‘神’의 개념은 없었다. 따라서 ‘토지신’이니 ‘신농’이니 하는 개념 및 그것이 구체화 된 내용과 ‘廟’ 등은 모두 한족의 문화로부터 이식된 것이라 보겠다.

한족은 스스로의 가치관념으로 장족의 가치관념을 평가할 때, 장족의 가치관념은 인류에 반하고 대역무도 한 것으로 판단, 금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송 태종은 982년에 <백성이 상례를 즐기지 않는 것을 금지(禁民喪禮作樂)>하는 칙령을 내렸고, 위반시 당사자를 ‘불효자’라는 이름으로 징벌함은 물론, 소재지 현의 관원들 역시 직무를 유기한 죄로 면직된 것과 같은 것이 그 예다.<sup>24)</sup>

24) 詔曰 .. “訪聞喪葬之家, 有舉樂及令章者. 蓋聞鄰里之內, 喪不相春, 苴麻之旁, 食未嘗飽, 此聖王教化之道, 治世不刊之言. 何乃匪人, 親罹饜酷, 或則舉奠之歌吹爲誤, 靈柩之前令章爲戲, 甚傷風教, 實紊人倫. 今後有犯此者, 並以不孝論, 預坐人等第科斷. 所在官吏, 常加覺察, 如不用心, 並當連坐.” 元 脫脫等撰, 《宋史》一卷125(제1판; 臺北: 鼎文書局, 民國69年), 799쪽.

한족 문화가 장족문화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장족문화를 통합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17세기 말에 완성된 《廣東新語》卷9 <唐氏鄉約>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는 명조 초기 (14세기 후반) 광둥에는 唐豫라는 문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의 ‘蠻夷習俗’을 바꾸기 위해 한족의 습속 윤리를 규범으로 하여 마을의 鄉約을 제정하였다.<sup>25)</sup> 예를 들면 과거 이 고을에서는 혼례를 거행함에, 남자 집에서 주연을 베풀 때, 신랑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모는 그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 앉았는데, 이는 한족의 예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족의 예교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설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옆에 매우 공손한 태도로 시립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앉는 것을 불허하였으며,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 부모가 사망하면 장례 때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등 큰 잔치를 베풀 수 없었으며, 친지들이 조문을 오면 채소로 만든 음식만 접대할 수 있었을 뿐, 생선이나 육류 등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이후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기일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때에는 상례 때와 같이 해야 하였다. 축문을 읽은 후에 상주(제관)는 애통한 마음으로 곡을 하고 그날은 술을 마시거나 육류를 먹어서는 아니 되었다. 그 날 밤 상주는 부모의 묘소 옆에서 하룻밤을 새워야 했다. 우리 한국의 이와 유사한 전통이 있다. 다만 상례시 어류나 육류 및 그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금한 것은 우리민족과 다른 점이다.

17세기 이후 중국은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통치자들이 누차 금령을 내려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 이식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장족의 고유 상례 습속은 전면적으로 한족의 그것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후 장족의 상례습속은 한족의 그것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갔다.

25) 白耀天, 앞의 논문, 8쪽.

## IV. 壯族의 喪葬禮 習俗

이 장에서는 장족의 안장(安葬) 방법과 빈장(殯葬) 절차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安葬 方法

안장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사자를 장사 지내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안장방법은 전체 장례의식의 한 부분으로 사자의 시신에 대한 처리 방법을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장족의 시신에 대한 안장방법은 시간에 따라 변해 왔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 특히 외래문화의 영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변화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장족의 전통적 장례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屈肢 土葬

굴지 토장은 시신의 사지를 굽혀서 땅에 묻는 매장으로 屈肢蹲式 또는 蹲踞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1차 장례에 속한다. 광서자치구의 桂林 甌皮岩, 扶綏의 敢造, 橫縣의 西津, 秋江, 邕寧長塘 등지의 신석기 시대 패총 유적지 속에서 이러한 식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다.

광서는 옛날부터 越族의 한 가지인 甌駱人이 거주하는 지방이다. 오늘날의 장족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越族의 일족인 甌駱人의 후예다. 따라서 신석기시대의 굴지 토장은 장족 선조들의 비교적 보편화된 안장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당대(6~9세기)에 와서도 이러한 안장방법은 越族 후예의 하나인 僚族 사회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다.<sup>26)</sup>

26) 唐代에 段成式이 쓴 《酉陽雜俎》 卷4는 귀주성의 僚族들은 사람이 사망하면 관을 세워서 매장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僚在牂牁，其婦人七月生子，死則豎

굴지장의 특징은 사람이 사망한 후 굳어지기 전에 새끼줄로 두 손을 조아 붙이고, 넓적다리, 정강이를 바깥 붙여 동여매어 종아리 부위가 땅에 닿지 않게,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양으로 매장하는 것이다. 굴지장은 종족이나 자연생태 환경에 관계없이 세계 각지의 고대 사회에서 보편화된 매장 방법이다. 그 이유는 원시인의 사고방식이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죽은 자의 魂鬼가 재앙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망자의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즉 망자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기 전에 그의 사지를 단단히 조여 맨 다음 매장했다. 그럼으로써 그의 영혼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 (2) 暴尸拾骨 土葬

《墨子·節葬下》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 중국 영남지방 장족의 선조들은 부모가 사망하면 시신을 야외에 暴尸하였다가, 시신의 연한 조직이 완전히 부화된 후에 그것을 수습하여 목제 또는 옹기로 만든 관에 넣어 매장한 것으로 전한다. 고대 중국의 영남지역은 땅은 넓고 사람은 적었으며, 기후는 무덥고 강우량이 많아 삼림이 울창하고 육식 동물이 많았으며, 또한 전적으로 죽은 자의 시체를 먹고 사는 벌레들이 많았다. 魏나라 때 지금의 蒼梧(광서자치구 梧州市)의 刺史가 황궁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지금 광주서남에는 사람이 병들어 죽으려하면,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으니 보리 알만하고 등껍질이 있기도한데, 병자를 엿보다가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와서 죽은자를 먹는다. 비록 때려서 많이 잡아도 오는 놈들이 비바람같이 연달아 오므로 단절시킬 수가 없다. 근육을 모두 먹어 치우면 오직 뼈만 남기고 가버린다. 이러한 곤충들의 시체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환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신속하게 5, 6겹의 베로 사람의 몸을 둘러싸서 그것들이 달라붙어 입을 갖다 댈 공간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곤충들은 가래나무(梓木) 냄새를 두려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

棺埋之。”段成式, 《酉陽雜俎》附續集(北京, 中華書局, 1985), 36쪽.

에 가래나무 판자로 환자를 가리거나 가래나무로 만든 가구를 방안에 둠으로써 진한 가래나무 냄새가 그윽하도록 하면 그것들이 감히 망자가 안치된 방에 접근하지 못했다.<sup>27)</sup>

이러한 暴尸 捨骨의 안장방식은 티베트족의 天葬과 유사하나 습골하여 매장하는 것은 훗날 장족사회에서 보편화 된 2차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1차장으로 끝냈다.

### (3) 火化 土葬

화화 토장이란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먼저 시신을 화장한 다음 수습하여 항아리에 넣어 매장하는 방식이었다. 10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광서의 서쪽지역과 광동의 동남지역 장족사회에서 유행한 주요 안장 방법이었는데, 이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도사나 무당을 불러 날을 받아 시신을 땀나무 더미위에 올려 놓고 불사른 후 뿔가루를 수습하여 항아리에 넣어 토장했다. 지금까지도 광서 서쪽 지방의 명대와 청대의 묘지에는 그 안에 평평한 소형의 항아리가 있고, 그 속에 화장된 뿔가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장 방식은 오랜 시간 유행했다. 비록 명청대의 관원들이 여러 차례 이러한 장례 습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후미진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날을 받아 시신을 불태우는 방법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광서의 大新縣과 같은 지역에서는 19세기 까지도 이러한 습속이 유지되었다. 비록 이들 지역의 안장방법이 ‘2차장’의 방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된 1950년대 까지도 각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가호호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상가에 한 다발의 火木을 메고 갔다. 이는 과거에 성행했던 화장습속이 유존하고 있음과 온 마을의 장례의식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화장이 성행할 때에는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마을의 가가호호에서는 각자가 책임지고 한 다발

27) 晉 張華, 《博物志》(北京, 中華書局, 1985), 15쪽.

의 화목을 상가에 부조하고, 그것을 쌓아 놓은 위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처럼 시신을 불살은 후에 토장하는 습속은 혼인 후 남자 집에 거주하는 제도 및 조상 숭배와 때를 같이 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러한 화화 토장과 수당 이전의 폭시습골장은 다르다. 폭시습골장을 할 때는 뼈를 간추려 매장한 후에 어떠한 성묘의식도 없었고, 곡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또한 망자의 처(鬼妻라 부름)는 죄를 뒤집어쓰고 집밖의 다른 곳으로 밀려 나갔으며, 사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집은 함께 불태웠다. 또 도사나 무당과 친지들을 청해 북과 징을 치고 노래 부르며 술을 마셨다. 이는 사자의 혼령을 살아있는 자녀들의 주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종의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이었다. 그러나 화화 토장이 실시되면서 비록 사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태우기는 했지만, 사자가 살던 집은 불태우지 않았다. 주거비는 《嶺外代答》에서 기록하고 있다. “欽族人들은 상주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대나무로 만든 망자를 쓰고 병이나 항아리를 가지고, 또한 지전을 지니고 물가로 가서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동시에 돈을 물속으로 던져 물을 사가지고 돌아와 사자를 씻겼다. 이것을 매수라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라고 여겼다. 오늘날의 흠족인은 물을 마셨으니, 돈으로 물을 바꿔와서 부엌에 길어다 놓는 것을 고수라 하였는데 흠함을 피하고자 이름붙인 것이다. 옹주계동에서는 남녀 한 무리가 함께 냇가에 나가서 목욕하고 울부짖으면서 돌아왔다.”<sup>28)</sup> 그런 후에 사자를 불태워 토장한 뒤에 사자의 혼령은 ‘家鬼’가 되어 자유로이 집에 드나들며 명절에는 자손들의 봉헌을 받게 된다.

#### (4) 二次葬

2차장은 사람이 사망한 후 먼저 사자를 염하여 매장하고, 3~5년이 지

28) “買水沽水; 欽人始死, 孝子披髮, 頂竹笠, 携瓶甕, 持紙錢, 往水濱號慟, 擲錢於水, 而汲歸浴尸, 謂之買水, 否則鄰里以爲不孝. 今欽人食用, 以錢易水, 以充庖廚, 謂之沽水者, 避凶名也, 邕州 溪峒, 則男女群浴於川, 號泣而歸.” 周去非, 앞의 책 6. 69쪽.

나 시신의 연조적이 부패하여 허물어진 후에 묘지를 파서 관을 열고 유해를 잘 가다듬어 닦거나 물에 씻어 말려 시신의 원 상태로 목관이나 옹기 속에 넣어 다시 안장하는 것이다. 사자의 뼈를 수습하여 새로이 안장할 때 일반적으로 물로 씻거나 종이로 일일이 닦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2次葬’, ‘洗骨葬’ 또는 ‘檢骨葬’이라 불렀다.

2차장 또는 2차 이상의 重葬은 장족 이외의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도 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타향에서 객사한 경우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현지에 먼저 매장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이장해 오는 예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을 기다려 이장하는 경우다. 물론 객관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족의 경우는 이와 다른 이유에서 검골장이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고대 장족 사회는 남자가 결혼하면 처가에서 거주했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 죽으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바로 남편의 고향에 매장하지 못하고, 처가의 부근에 가매장해 두었다가 근육과 살이 부패하고 뼈가 탈락된 후에 이를 수습하여 친가 부근으로 이장한 것이다.<sup>29)</sup>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영혼불멸의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사람의 피와 살은 인간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부패한 후에 정식으로 매장하면 그때 비로소 망자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관념에서 연유한 것이다.<sup>30)</sup>

광서의 桂西 지방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먼저 풍수를 불러 장지를 정하고 타원형의 무덤을 만들어 매장을 한다. 그리고 3~5년을 기다린 후 시신을 넣었던 시체 키의 절반 높이의 단(壇)안에서 끄집어 내고, 풍수를 불러 다른 묘지를 정하게 한 다음 다시 매장한다. 이 분묘의 모형은 원형으로 쌓는다. 또 5년 전후가 경과된 후 묘혈을 살펴보아 단 내에 물이 고여 있거나 썩은 흙이 침투해 있으면 불길한 것으로 보고 다

29) 張聲震 主編, 앞의 책上, 191쪽.

30) 嚴汝嫻·劉寧, 앞의 책, 168쪽.

른 곳을 택하여 다시 매장한다. 묘혈 안이 이물질의 침투가 없이 깨끗하면 그곳을 그냥 ‘大葬(永久葬)’의 장소로 확정한다. 어떤 경우는 4~5차례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sup>31)</sup>

2차장은 17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족사회에서 보편화 된 주요 안장방식이다.<sup>32)</sup> 19세기 후기까지도 화화토장을 행하고 있던 광서 대신현 下雷鄉의 장족들은 사람들이 시신을 불태우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 관 속에 넣어 매장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火化 토장’의 습속이 ‘2차장’으로 바뀐 것이 이처럼 간단히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관념 변화의 결과라고 보겠다. 장족이 유골을 다시 점검(檢骨)하여 2차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치아를 빼어 버리는 데, 이것은 모두 인간 세상에 속하는 일이지 천지신령이 사람에게 부여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죽으면 금방 종이나 베를 가지고 조상 신주를 모시는 단을 덮어씌움으로써 망자의 더러운 기운(穢氣)이 조상 신령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사망한 후 염하여 묻어 두었다가 검골하기까지는 망자의 위패를 단독으로 설치해 두지만, 검골 후 다시 매장(2차장)하면 곧 바로 망자의 위패를 철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부터 망자의 혼령이 ‘家鬼’의 행렬에 동참하여 더 이상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족의 관념으로는 죽은 사람의 불결은 근육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근육과 같은 사람의 치아는 모두 인간세상의 물건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여 버리지 않으면 혼령이 불결하여 ‘家鬼’의 행렬에 동참할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람이 사망하여 치루는 제1차 장례식은 망자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 반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의식이며, 제2차 장례식은 비로소 그것이 가정의 귀신 집단에 들어가게 하는 의식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의식(2차장)을 통과하고 그의 혼령이 ‘가귀’의 행렬에 가입하면 그것은 가족 조상신의 일원이 된다고 보았다.

31) 위의 책, 168-169쪽.

32) 2次葬의 기원에 대해서는 石奕龍, 《中國民俗通志(喪葬志)》(제1판,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5), 63-73쪽.

## (5) 기타 안장 습속

장족의 장례 방법은 이상에서 고찰한 방법 이외에 岩洞葬, 五塊骸葬, 水葬과 1次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4가지 방법의 장례의식은 일부 지역의 일부 장족 사회에서 유행했던 장례방법에 불과했다. 즉 장족사회의 주류적인 장례의식은 아니었다. 이들 장례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岩洞葬

암동장은 천연적인 석산의 동굴을 장지로 안장하는 방법이다. 장족의 암동장은 모두 2차장에 속한다. 장구는 대개 항아리(陶器)나 목관을 사용했다. 유해를 넣는 항아리를 장족들은 ‘金鐘’ 또는 ‘金罐’이라 불렀다. ‘금종’은 높이 60~70cm, 직경 30~40cm인 원주형 陶器로 2차장을 할 때 뼈를 수습한 후 이것에 넣어 바위로 된 동굴의 장지에 갖다 놓았다. 장족이 거주한 지역의 석산 동굴 근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목관의 경우 안의 길이가 80~120cm, 넓이가 50~60cm의 크기인데, 어떤 목관에는 한 사람의 유골이, 어떤 목관에는 2~4구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다. 장족들이 목관을 이용하여 암벽에 안장한 지역은 현재 광서자치구의 하천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田東, 平果, 隆安, 大新, 龍州, 崇左, 扶綏 등의 縣이다. 平果, 隆安, 大新縣의 암동장에서 발견된 부장품을 보면 당대(758~760), 명대(1368~1644), 청대(1662~1722)에 주조한 동전들이 들어 있고, 특히 平果縣 坡造鄉의 100여 구 목관 속에서는 “雍正十二年(1734年) 三月初六” “正墓”(重葬)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들 지방의 목관 암동장은 그 연대가 18세기 이후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 장족사회에 성행했던 ‘2차장’의 연대와 맞아 떨어진다.

## ② 五塊骸葬

五塊骸葬 역시 2차장의 한 방법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이 사망한 후 엄을 하여 얇은 관에 넣어 택일하여 매장하고, 1~2년이 경과한 뒤에

시신의 연조직이 부화된 것과는 상관없이 도사나 무당을 불러 택일하여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머리 부분 및 상지의 양 팔 부분과 하지의 양 정강이 등 모두 다섯 부분의 뼈 조각을 쪼아 항아리 안에 넣어 장지를 골라 다시 매장하는 것이다. 그 외의 기타 뼈 조각은 원래의 목관과 함께 땅 속에 묻어 버리고, 재차 돌보지 않는다. 오괴해장은 언제부터 행해진 습속인지는 잘 모르나 청대 光緒(1875~1908) 초년에 광서 慶遠府(현재의 宜山縣) 소속의 몇몇 州와 縣에서 유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슨 연유로 그러한 장례습속이 생성된 것인지는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측하기는 어렵다. 19세기 70년대 慶遠府 지사(知府)<sup>33)</sup>로 부임한 董傳策이라는 지방장관은 이러한 장례습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엄금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산하 주와 현의 관리 및 부의 과거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게 각자가 모두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과 거주하는 지방에 명령을 내려 일률적으로 오괴해장의 장례의식을 혁파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관리를 바로 파면하고 과거 수험생은 영원히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있는 후 경원부 산하 주와 현의 '2차장'은 비로소 여타 지역 장족의 그것과 보조를 같이했다. 즉 다시 매장(重葬)을 할 때 망자의 유해 전부를 잘 맞추고 정돈하여 순서대로 '금중' 안에 넣어서 묻었다.

### ③ 水葬

40~50년 전 광서 東蘭縣의 장족에게는 물속에 묻는, 이른바 수장의 습속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친지들이 시신의 머리칼을 빗질하여 정결하게 한 후 베를 이용하여 시신을 나무 사다리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그 위에는 흰 천을 덮고, 그 옆에는 한 마리의 닭이나 강아지를 동여 맨 후 징과 북을 치며 시신을 강이나 하천 또는 깊은 못의 물속에 안치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친지들은 시체가 가라앉으면 모두 흩어져 돌아갔다. 이러

33) 明清시대 府의 장관, 大尊이라고도 함.

한 장례습속은 “사람은 물에서 나고 죽어서 물로 돌아간다.”는 고대 장족의 관념에서 연유한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 ④ 一次土葬

1차토장이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목곽에 넣어 날을 받아 무덤을 쌓아 묻고, 다시는 옮기지 않는 장례습속이다. 이 장례방법은 특별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비정상적인 사망 또는 요절한 경우에 행하는 장례방법이었다.

## 2. 殯葬 절차

장족사회의 빈장 절차 역시 안장방법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변해 왔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장족의 전통적인 빈장 절차도 일반적인 빈장 절차와 같이 報喪, 入殮, 入棺, 停柩, 出喪, 守孝 등의 의식이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報喪

사람이 사망한 후 먼저 같은 마을 가까운 이웃과 형제에게 알리고, 다음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친지들 및 도사나 무당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報喪이다. 옛날 장족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俗言이 있다. “婚姻檳榔, 死喪唃鏘”이 그것이다. 혼사에는 혼주가 손님으로 청할 때만이 가서 축하를 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는 상가에서 북과 징만 쳐도 들은 사람은 모두 청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장족의 보상 방법은 지역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종류가 있다.<sup>34)</sup> 그 하나는 폭죽을 세 번 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대성통곡하여 이웃에 알리

34) 覃聖敏, <廣西壯族的喪葬習俗>, 《廣西民族研究》 1989年 4 (廣西民族研究所, 1989), 73쪽.

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사망 후 입관하기 전까지는 곡성을 내지 않고 흠모하는 눈물만 흘림으로써 망자의 혼령이 슬퍼 흠어지는 것을 피했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법은 죽음을 알리는 징을 치는 것이다. 東蘭縣 일대에서 많이 활용하던 방법이다. 마을에는 전문적으로 죽음을 알리는 징(喪鑼)이 있었으며 평상시에는 활용하지 않다가 사람이 사망하면 칠 수 있었다. 이밖에 많은 지방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이웃에 굳이 형식을 갖추어 報喪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장족이 거주하는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아 마을 사람 중 누가 병이 들고, 병의 증상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집 앞만 지나도 사망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이 위중하면 가족과 이웃이 환자의 옆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사망 즉시 서로 사망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崇左, 扶緩 등지에서 폭죽을 쏘아 마을 사람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큰 대나무 장대로 지붕의 정상을 뚫어 망령이 승천하기에 편하도록 하는 이른바 ‘開天窗’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망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스스로 하던 가사 일을 놓고 재빨리 상가에 와서 음식 장만을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스스로 할 일을 찾았다. 평상시 나이가 많고 촌민들 중에 명망이 높은 노인이 주동이 되어 각자에게 할 일을 나누어 맡기고 진두지휘했다. 예를 들자면 누구는 어느 친지에게 상보를 알리고, 누구는 상사용품을 준비하며 누구는 도사나 무당을 청해 오도록 하는 등등의 일을 안배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쌀을 가져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또 어떤 사람은 닭이나 오리, 그리고 흰 베 등을 부물로 가져왔다. 大新縣 일대에서는 마을의 가가호호에서 한 아픔의 장작을 가져다주기도 했는데, 이는 과거 이 지역에서 성행했던 화장제도의 유습 때문이다.

외지에 있는 친지들에게 사망소식을 알리는 일(報喪)은 일반적으로 망자의 방계 친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했다. 부음을 알리는 사람(報喪人)이 친지들의 집에 도착하면 통상 바로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문

밖에서 사람을 불러 대문 앞에 재를 뿌리게 한 후에야 비로소 상보인은 대문턱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 정황을 설명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상보인의 팔에 흰 완장을 차게 함으로써 그 친지들이 즉각 알아보도록 하기도 했다. 만약 망자가 여자라면 먼저 외가에 알리도록 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친생 자녀가 직접 가서 알렸다. 上思縣 思陽鄉에는 친생 자녀가 외가에 어머니의 사망소식을 알리러 가면 외족은 그를 맞이하자마자 꿇어앉는 풍속이 있다.

도사나 무당에게 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망자의 방계 친족이나 마을 사람이 가서 사실을 알렸다. 갈 때 한 폭의 흰 베와 한 꾸러미의 얇은 종이(紗紙)를 가져갔다. 어떤 지방에서는 한 주발의 백미를 가져가기도 했다. 도사나 무당은 이러한 사람과 가져온 물건을 보면 바로 어느 마을에 초상이 난 것을 알게 되고 장례의식에 대해 논의 하게 된다. 어떤 지방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자가 직접 도사나 무당을 찾아가 부모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상례절차를 논의하기도 했다.

## (2) 入殮 또는 裝殮

사람이 죽고 입관 전에 망자의 시신을 씻거나 닦거나 옷을 갈아입히고 안치하는 과정을 총칭하여 입렴 또는 장렴이라 한다. 사람이 죽은 후 대부분의 장족 지역에서는 모두 시신을 씻어주거나 닦아 주는 습속이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자가 음달 방에서 조상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돌아갈 집이 없는 들 귀신이 된다고 했다. 시신을 씻거나 닦을 때에는 오래된 빗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샘이나 하천변의 맑은 물을 사 와서(買水) 사용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방계 친족의 부인들이 물을 사러 간다. 그러나 대신현, 田林縣과 環江縣 龍水鄉 등지에서는 도사나 무당 일행이 징과 북을 치며 상주와 손자들을 데리고 하천가에 가서 사방을 향해 동전을 던지거나 물속에 동전을 던진 후에 도자기 그릇으로 물을 길러 돌아온다. 망자가 만약 아들이 없으면 물을 사러 갈 때 형제의 한 아들(조카)이 그 일을 대신했다. 그리고 물을 사러 간 조카는 망자의 권리를 계

승하고 모든 유산까지도 이어 받는다.

신선한 물을 길러온 후, 깨끗한 솔에 부어 끓여 유자나무의 잎(또는 黃皮樹, 柑桔樹, 복숭아의 잎)을 넣어 식힌 후에 망자의 시체를 씻거나 닦아 준다. 이 때 사용하는 물을 ‘더러운 것을 벗기는 물’이라 해서 ‘解穢水’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망자의 자녀가 씻어주며 근친들은 이를 도울 수 있다. 시신을 닦는 방법을 어떤 지방에서는 엄격히 정하고 있다. 扶綏縣과 같은 지방은 흉부를 세 번 닦고, 등을 다섯 번 문지른 후에 다시 다리로부터 위를 네 번 닦아준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신을 씻을 때 눈과 귀를 특별히 중히 여기는데, 그 것은 양귀와 눈으로 이 세상 모든 일을 더 이상 보지도 말고 들지도 말고 편안히 가라는 뜻이며, 귀와 눈을 다 씻고 닦은 후에는 면화로서 망자의 양 귀를 막아주었다.

시신을 씻긴 후 일반적으로 망자의 머리를 깎거나 빗질을 한다. 남자의 경우 머리와 수염을 깎고, 여자의 경우 머리를 빗질해 준다. 扶綏縣의 경우 시신을 씻거나 수염을 깎는데 사용한 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했으며, 특별히 주의해서 보관하였다가 출상 후에 다시 처리했다.

이어서 망자에게 수의와 신을 갈아입힌다. 일반적으로 3~4벌의 홑옷과 색깔은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붉은 색은 금했다. 밖에 입는 겹옷은 흰색 천으로 만들었다. 凌雲縣에서는 상의 다섯, 하의 셋을 입혀야 했고, 龍勝縣에서는 장삼과 외투를 반드시 입히고, 아랫도리에는 새 바지를 입히고, 머리에는 모자를 씌우고 발에는 새로 짠 베로 만든 신을 신겼다. 만약 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어떤 지역에서는 베로 만든 신발의 곁에 한 쌍의 띠 풀로 만든 신을 한 켤레 더 신겼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머리에 흰 털로 만든 건을 씌우거나 팔에 흰 띠를 채웠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자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져, 부모의 사망 시 그것을 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관 속에서나마 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고하고자 했던 의미다.

수의를 갈아입힌 후 통상 망자의 입 속에 한 푼의 동전을 집어넣는 데, 어떤 지방에서는 또 동전으로 양 눈과 양 귀, 그리고 콧구멍과 입을 봉하

거나, 머리 위에 돈을 놓은 후 흰 천으로 사지가 보이지 않게 시신을 덮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망자의 손 위에 돈을 놓거나 엄지 위에 동여매기도 했고, 망자의 입에 돈을 넣은 다음 붉은 종이를 가지고 입을 봉하기도 했다. 이는 망자가 저승에서 인간세상의 일을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시신을 흰 천으로 덮은 다음 집의 한 쪽 편에 옮겨 머리를 안쪽 방향으로 하고 다리를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여 이른 바 ‘靈床’이라 부르는 대나무로 만든 바닥위에 안치한다.<sup>35)</sup> 영상 위에 출가한 딸이 보내 온 약 5, 6척 길이의 흰 천이나 蘭布(남색 천)로 덮는다. 大新縣에서는 사위가 보내 온 5척 길이의 紅白布로 이불을 만들어 덮는다. 이 때 특별히 고양이와 개가 시체의 위로 뛰어 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유는 고양이나 개가 시신의 위로 뛰어 가면 시신이 곳곳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모기장 같은 밧을 영상 앞에 세우고 또 사람이 옆에서 지켰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고양이와 개에게 흰 띠를 매어 주었다.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시신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염을 완료한 후 어떤 지방에서는 집의 벽을 허물어뜨린다. 집안의 모든 문을 열고 대문 밖에 ‘長幡’이라 부르는 흰색 종으로 만든 기를 꽂았다. 장번은 흰 종이를 잘라 이어서 만들었고, 망자의 나이에 맞춰 몇 장의 종이를 이어 붙였다.

영상 앞에 차리는 제수용품으로는 통상 향료와 한 그릇의 쌀밥이나 백미를 놓고 그 위에 한 모의 젓가락을 꽂았다. 그리고는 입관 시를 기다리는 동안 도사나 무당은 상주를 데리고 부근의 산이나 동네 언저리로 영혼이 갈 길을 열기 위해 한 차례 도는데, 이 때 상주는 잡귀신들에게 돈을 뿌린다. 이유는 그들 잡귀들의 소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35) 大殮한 뒤에 시체를 두는 곳, 죽은 이를 위해 가설해 놓은 침대.

## (3) 入棺 의식 및 상복

입관 일시는 도사나 무당이 정하고 일반적으로 외삼촌이 오기를 기다려 입관한다. 특히 망자가 여인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입관 때에는 도사나 무당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다. 입관은 모두 집의 조상신단 앞에서 한다. 하지만 망자는 아직 조상신단에 올라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사나 무당은 샷갓으로 신단 위의 향로를 덮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장의 종이로 조상의 신위를 가려 하늘에 있는 영혼인 조상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지 않도록 한다.

입관 전에 목곽을 靈床 원편에 옮겨다 놓고 두 개의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로 바쳤다. 관 밑에는 채질하여 정갈하게 한 한 층의 목초 재를 깔고, 다시 종이를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백미를 흘리고 베개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네 구석을 누르며 평평하게 한다. 잘 고른 후 1~2장의 이불을 깐다. 이 보다 간단하게 하는 지방도 있었다. 관의 바닥에 먼저 초석과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36개의 동전이나 금속화폐를 사람모형처럼 배열해 놓은 다음 시신을 들어 관에 넣었다.

입관을 하려 할 때 도사나 무당은 관을 돌며 주문을 외우고 칼을 들어 계란을 쪼개는데, 이는 망자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뜻이다. 이어서 친족들이 시신을 들어 입관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들은 머리를 들고 그 외의 가족들은 몸과 손발을 든다. 시신을 들어 입관할 때는 아무도 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입관 후에 다시 한 폭의 백포로 시신을 덮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모든 가족이 각기 한 폭의 백포를 시신 위에 덮어야 했다. 그리고 망자가 평소 좋아하던 의복과 물건을 놓는다. 예컨대, 망자가 생전에 목수 일을 했다면, 평소 사용하던 공구를 부장품으로 넣었다.

관을 덮은 후에는 관의 네 귀퉁이에 쇠못이나 대나무 못을 박는데, 이때 망자의 자녀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관을 완전히 봉한 후에는 자녀들이 곡을 하고, 오동나무 기름을 목초의 재와 섞어서 관 두껍의 사방을 풀칠하듯 메우고 종이로 관 전체를 받랐다.

관을 덮고 봉한 후에는 집의 전반부 가운데에 놓고 시신의 발 부분이

밖으로 향하도록 갖다 놓았다. 하지만 망자의 장형이 살아 있는 경우는 그 관을 집의 가운데 위치에 놓지 못하고 남자의 경우 집의 오른쪽에, 여자의 경우 왼쪽에 놓았다.

관을 안치한 후 관의 머리맡에 하나의 교자상을 놓고, 교자상의 후반부에 대나무와 종이로 3쪽의 손잡이 문이 있는 1 미터 높이 정도의 빈소를 만든다. 그것을 ‘靈臺’라 불렀다. 그 문 앞에는 향로를 놓고 조문객이 향을 피우게 했다. 향로의 뒤편 중간에는 망자의 위패를 세웠다. 관의 머리 부분에 작은 등잔불을 밝혔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관의 밑 부분과 뚜껑 부분에 각각 하나의 등잔불을 켜기도 했다. 원래 입관 전에 찹쌀 밥 한 그릇을 靈床 앞에 바치는데, 입관 후에 그것을 어떤 지방에서는 위패 앞에 옮겨 놓고, 또 어떤 곳에서는 위패 아래의 관의 앞으로 옮겨 놓기도 했다.

‘영대’에 차리는 제수품은 통상 중간에 한 마리의 작은 닭을 놓고, 양쪽 옆에 두 토막의 돼지고기를 차리며 앞 부분에 3개의 잔을 놓았다. 어떤 지방에서는 비교적 융숭하여 돼지 머리, 양 머리, 닭 한 마리, 돼지 수육, 과일 등을 차렸다.

靈臺의 양 편에 흰색이나 남색 천으로 여단을 수 있는 휘장을 치고, 휘장 뒤 관의 양 편에 벼짚이나 대나무 자리를 깔고 남녀 상주들이 혼령을 지켰다. 남자 상주는 영구의 좌측에, 여자 상주는 영구의 오른쪽에 섰다. 조문객이 여자라면 휘장을 걷고 들어가 여자 상주와 함께 껴안고 통곡했다. 하지만 남자 조문객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때부터 상주들은 상복을 입는데, 상복의 형식은 지역에 따라 일정치 않았다. 하지만 붉은 색은 피하고 흰색의 천으로 상복을 지어 입었다. 일반적으로 남자 상주는 흰색의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자 상주는 흰색의 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남녀 상주 모두 머리에 흰 색 수건(어떤 것은 3~5척이나 되었다)을 동이고 허리에는 흰색 띠를 매었으며, 짚신을 신었다. 어떤 지방에서는 흰 허리 띠 위에 삼나무 껍데기로 끈 끈을 하나 더 매기도 했는데, 삼베 끈 2~3촌 마디마디 마다 아래로 드리도록 흰 종이를 동여매었다. 扶綏縣 등지에서는 여자 상주는 풀어 헤친 머리 위에 흰 종이

로 만든 모자를 쓰고 발에는 흰 종이를 붙인 신을 착용했으며, 남자 상주는 흰 종이를 휘감은 지팡이를 들었다. 머리를 푼 것은 너무나도 애통하여 빗질을 할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며, 지팡이를 짚은 것은 비통함이 극에 달해 지팡이 없이는 몸을 가눌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龍勝縣에서는 남녀 상주는 모두 상복이외 일체의 장신구를 벗고, 대신 삼베로 만든 끈을 손에 매었다. 망자가 남자면 왼 손에, 망자가 여자라면 오른 손에 삼으로 만든 끈을 휴대했다. 그리고 흰 무명실로서 귀걸이를 대신했다.

대부분 장족 거주지역의 상례습속에 의하면 손 위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가 죽거나 동생이 죽은 경우 그 부모나 형과 누나(언니)는 상복을 입지 않았으며, 처가 세상을 떠나도 그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하지 않았다.

#### (4) 停柩

시신을 입관한 뒤 출상하기 전까지 시신을 넣은 관을 집안에 안치하는데 이를 ‘정구’라 했다. 정구시간은 지역마다 일정치 않지만 대개 2~3일 또는 7~8일이었고, 20일 이상인 지역도 있다. 이 기간에는 시신을 지키며 영가축원을 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영가축원의 내용은 번잡하고 많았다. 어떤 지방에서는 도사를 불러 주재케 했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무당이 주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上林縣의 新聯과 下江, 洋渡 일대에서는 아예 도사와 무당과 승려를 모두 부르는 지방도 있었다. 세 사람을 모두 부른 목적은 망령이 빨리 승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승려는 주로 불경을 외웠고, 도사는 金剛經이나 彌陀經 등을 외웠다. 그리고 무당은 <二十四孝>나 <布伯>, <妹六甲><sup>36)</sup> 등을 외웠다. 무당은 노래와 춤을 추며, 망령의 생전 일이나 자녀들의 망

36) <二十四孝>는 부모를 위해 24가지 일을 한 효자의 이야기. <布伯>는 신화 속의 영웅으로 장족에게 물을 확보해준 인물의 이야기. <妹六甲>은 布洛陀와 부부인데, 이들은 천상에 살던 신선으로 장족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며 장족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의 이야기.

자에 대한 후회스런 일을 떠 올리게 하는 등 슬픔을 자아내게 하고, 이에 따라 상주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시신을 지키는 동안 상주들은 도로나 무당을 따라 시신을 안치한 관을 매일 밤 3~4차례 천천히 돌면서 곡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그 때마다 도사 또는 무당은 망자의 평생과 상주의 일상사를 가사로 만들어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이는 자녀들에게 경노사상을 교육하는 좋은 기회였다. 망자의 고난스런 생전의 생활과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노래를 들을 때 문상객들은 함께 울음을 터뜨려 곡성이 진동했다.

조문객이 오면 영전에서 먼저 세 개의 향을 피운 후 세 번 절을 했다. 그리고는 관의 왼편에 서있는 남자 상주에게 걸어서 위로하면 상주는 조문객에게 세 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그 후 상가의 친지들이 조문객을 접대하며, 음식은 두부나 콩, 채소류였다. 일반적으로 친척이 조문할 때 ‘囑白事酒(상사때에 마시는 술)’, 또는 ‘吃豆腐(두부가 흰색이므로 역시 상사때에 먹는 음식을 가리킴)’라 하며 울부짖었다. 통상 조문객들은 몇 자의 비단으로 만든 挽聯(만장)을 가지고 오는데, 그 위에 대개 “仙逝瑤地(신선, 즉 사자가 이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 “駕返仙宮(사자가 자신의 신선 궁전으로 돌아갔음을 의미)”과 같은 글귀를 썼다. 또 약간의 쌀이나 콩, 그리고 그밖에 약간의 부물(賻物)을 보내기도 했다. 부물의 곁에는 ‘香儀’라고 썼다. 어떤 지역에서는 친지들이 만련 이외, 찹쌀 다섯 근과 쌀가루 세 근을 보냈다. 사위나 딸인 경우 돼지나 양을 잡아 오고 각종 채소류의 음식을 장만해 온다. 그리고 출상 때 사위는 소와 돼지 및 양 등을 잡아 제를 올리고 악대를 불러 징과 북을 치며 앞장세웠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소, 양, 돼지, 쌀과 술 등을 끌고 행상을 뒤따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위는 소, 돼지, 양 등을 잡아오는 것 이외도, 상여나 만장 등을 예물로 가져와야 했다.

장족의 상례 습속에 의하면 입관 전에는 가족들이 식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입관 후에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것도 채소류라야 했고, 매운 채소는 먹어서는 아니 되었다.

## (5) 出喪

장족은 일반적으로 출상의 일시를 아주 중시했다. 어떤 지방에서는 오후에 출상했고, 어떤 지방에서는 오전에 출상했다. 광서의 隆林縣 일대에서는 닭이 울고 동이 트기 전에 발인제(出祭)를 올렸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는 관을 미리 문밖에 옮겨놓았다. 장족의 관념으로는 닭이 우는 시간에는 혼령이 문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가 진 후 닭이 울기 전까지는 출상 할 수 없었다. 이때에는 들 귀신이나 홀로된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출상 바로 전날 밤 가내에서 융숭한 제사를 올려야 했다.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개 세 번 제사를 올린다. 상주들이 올리는 제사(‘家祭’라 부름)와 사위가 올리는 제사, 그리고 처가나 친정에서 올리는 제사 등 세 가지다. 50~60년 전에는 제사 때 반드시 소, 양, 돼지를 잡았고,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개까지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했고, 보통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내버리기 때문에 제수 음식은 많지 않았다.<sup>37)</sup>

상주들이 올리는 제사는 장자가 제주가 되고 친족 중의 나이 많은 어른이 주관한다. 제수 음식은 큰 돼지 한 마리다. 만약 망자의 자녀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歌喊禮’<sup>38)</sup>를 해야 하고 큰 돼지 이외, 다음과 같은 음식을 제수 음식으로 차려야 했다. ‘五生’(돼지의 심장, 간, 폐, 장과 콩팥), ‘五熱’(구운 고기, 백숙,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五輩’(닭고기, 꿩, 飛風(닭의 한 종류), 금 거북이, 옥토끼)과 ‘五素’(다섯 가지 채소) 및 과일 등 모두 46 쟁반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주는 영전에 무릎을 꿇어 앉고 기타 자녀들은 그 뒤에 꿇어앉는데, 남자는 왼편에 여자는 오른 편에 앉았다. 그리고 상주들은 상복과 짚신, 방갓을 쓰고 남자 상주는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면서 차례대로 향불을 지피고 술잔을 올렸다. 여자 상주는 그 뒤를 따랐다. 상주들이 上香을 한 후 집사 어른의 안내에 따라 제문을 읽었다. 그리고는 제문을 불태우고 옆드려 이마로 땅을 치며

37) 白耀天, 앞의 논문, 13-14쪽.

38) 노래부르며 큰소리로 통곡하는 것.

세 번 절을 했다. 이어서 주관자가 상주를 데리고 사방의 신령들에게 무릎을 꿇려 절을 시킨 후 돌아와 영구 앞에서 다시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올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 이 제사는 대개 한 두시간 소요되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주들은 영구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 향과 술을 올리고 모두 아홉 번 절을 한다.

다음은 사위가 올리는 제사인데, 19세기 이전 사위가 지내는 제사는 모두 소, 돼지, 양을 잡아 차렸다. 하지만 19세기 이후에는 돼지 한 마리로 족했다. 제사 때에는 사위가의 친속이 모두 다 오는데, 20여 명을 넘었으며, 날라리 악대도 동원했다. 제사는 망자의 친족 중 나이 많은 어른이 주재하였다. 제사가 시작되면 제수용품을 차리고 사위는 영전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집사의 지휘에 따라 향불을 지피고 술잔을 올린 후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여 세 번 절을 한다. 그리고 제문을 읽고 불태운다. 다음 다시 두 차례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며 세 번 절을 한다. 사위는 모두 아홉 번 절을 하고 일어나면 상주(장자)가 휘장의 뒤에서 기어 나와 제관들에게 꿇어앉은 채 고개를 숙여 감사의 답례를 한다. 그것에 따라 휘장 뒤편에 있던 남녀 상주가 큰 소리로 곡을 한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는 집사의 말에 따라 제수 음식을 모두 치운다. 만약 망자의 사위가 여러 명 있다면 나이의 순서에 따라 제사를 올린다. 어떤 몇몇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사위가 제사를 마치면 상가의 친족 총각들이 사위의 얼굴에 술 밑의 검정 재를 칠하는데, 이를 망자의 하사품으로 여겼다.

처가나 친정에서 올리는 제사의 경우, 제수 용품은 사위가 올리는 제사 때나 같다. 하지만 돼지의 경우 사위가 올리는 것 보다는 큰 것이다. 친정의 제관들은 그 규모가 커서 수십 명, 심지어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집안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 타성을 청하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심지어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하는데, 그것은 친정 가문의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망자의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출상일 전 날 도사나 무당은 망자의 친지 중 3~4명의 청년을 데리고 망자를 묻을 장지로 가서 묘혈을 판다. 무당이 묘지를 정하는 방법은 장

족이 거주하는 지역과 시기, 그리고 도사의 특성에 따라 달랐다. 명대에는 ‘卵卜法’이 유행한 것으로 전한다. 가상의 장지에서 무당이 손 위에 하나의 달걀을 집어 들고 신령에게 축원한 후 그것을 그 땅위에 던졌을 때 그것이 부숴 지지 않고 온전하면 그곳을 길지로 본 묘지 선정 방법이다. 현재 ‘卵卜法’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달걀이 부숴지면 길지이고, 부숴지지 않으면 불길한 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상의 장지(장지로 삼기를 원하는 땅)에 먼저 젓가락만한 크기의 상단이 평평한 대나무 몽둥이를 박은 다음 그 위에 하나의 달걀을 올려놓았을 때 그 달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길지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곳을 장지로 결정하여 묘혈을 파도록 했다. 묘혈은 깊이 파야 하는데 만약 들어 낼 수 없는 큰 돌(바위)이 닿으면 그것을 쪼개거나 부숴 없애야 했다. 두 곳에 묘혈을 팔 수 없도록 했다. 그것은 상가의 가족 중에 쌍 초상이 남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출상 시간이 다가오면 도사(또는 무당)는 상주와 백관들은 이끌고 경을 읽으며 관을 한 차례 돈다. 그리고 관의 아래 위에 놓여 있는 등잔을 소거하고 위패를 치운 뒤 관을 들고 출문한다. 運喪하는 사람은 가족 중의 젊은 남자 8명을 한 조로 하였으며 도중에 다른 한 조와도 번갈아가며 운상할 수 있었다. 관이 집밖으로 나갈(출상) 때 남녀 상주들은 문전에서 엎드린 채 눈물을 흘리며 영구를 꿰어얹아 전송한다. 관은 머리 부분부터 두 차례 치켜 들은 다음 세 차례 때 도로를 향하게 하고 전송한다. 이어서 두 장의 긴 등상 위에 관을 놓고, 상두꾼들로 하여금 흰 베로 꼬아 만든 밧줄과 멜대를 준비하게 한다. 이 때 두 사람의 중년 부녀가 각각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로 관의 양 쪽을 한 차례 쓸어내린다. 장족들은 이를 ‘掃魂’이라 한다. 즉 망자의 관에 붙어서 가는 산 사람의 영혼을 쓸어내리는 것이다.

준비가 완료되면 길로 나서서 장지로 향한다. 이 때 친족 중 한 사람이 맨 앞에 선다. 앞장 선 친족은 어깨 위에 묘제에 사용할 제수 용품을 담은 두 개의 작은 바구니를 메고, 한 손에는 죽은 사람에게 길을 비춰 주

는 하나의 작은 햇불을, 또 한 손에는 망자를 인도하는 작은 향불을 들고 간다. 그는 걸어가면서 때때로 폭죽을 터뜨리며 종이돈을 뿌린다. 그것은 연도의 홀로된 들 귀신들을 쫓아 그들이 망자의 길을 가로 막고 장난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한다.

이어 무당이나 도사가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길을 연다. 그 다음에 날라리 악대가 줄을 지어 슬픈 노래를 연주하면서 망자의 귀천을 축원한다. 그 뒤에 영구가 따른다. 雲南省의 몇몇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영구 앞에 망자의 위패를 등에 진 여자 상주가 따르고, 영구위에 한 마리의 수탉을 싣기도 한다. 큰 상주는 지팡이를 들고 곡을 하면서 맬대의 앞부분 오른편을 부축하며 영구를 따르고, 그 외의 상주들은 나이의 순에 따라 그 뒤를 따른다. 며느리와 딸 상주는 남자 상주의 뒤를 따르는데, 그들은 방갓을 쓴다. 그 외의 사람들은 여자 상주의 뒤를 따라 걸어간다. 일반적으로 친정이나 처족은 마을 밖에서 전송하고 멈춘다. 여타 문상객들도 절반 가까이의 도중에서 멈추어 서서 바라보거나 먼저 돌아간다. 영구가 묘지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관 위에 덮었던 담요(또는 이불)를 벗겨 안고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유는 망자의 영혼이 다시 집으로 따라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광서의 서쪽과 광동의 남쪽지방의 많은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관을 무덤 속에 넣기 전에 영구위에 싣고 갔던 수탉을 먼저 묘혈 속에 풀어 놓아 한 바퀴 돌도록 하는데, 그것은 묘혈에 숨어 있는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묘혈 속에 폭죽을 터뜨리고 불을 지른 후 하관을 하고 흙을 덮는다. 사용했던 닭은 안고 돌아와 마을에 풀어 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데 상가의 가족들은 먹을 수 없었다. 하관 때 큰 상주가 제일 먼저 한 삽의 흙을 덮고, 여타의 상주들이 차례대로 흙을 덮은 다음 전문 일꾼들이 봉을 완성한다. 봉을 완성한 후 제수용품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冥衣와 冥屋<sup>39)</sup>을 태우며 술을 땅에 엷지르고 작별한다. 운남의 몇몇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39) 죽은 사람을 위하여 종이로 만든 옷과 집.

여자 상주가 망자의 위패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나뭇잎에 싸서 다시 하천으로 가져 가 물에 흘려 보내기도 한다.

#### (6) 守孝(복상 기간)

시신을 매장한 후 자녀들은 일정기간 상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평소보다 생활을 엄격히 하며 애도를 표시하는 것을 수효라 한다. 수효의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는 사망일부터 계산하여 2년 내지 3년까지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경우는 보기 드물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90일 또는 30일, 어머니의 경우 120일 또는 40일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부모 공히 21일인 지역도 있고, 1개월 또는 49일인 지역도 있는가 하면 아예 3~5일 되는 날 탈상하는 경우도 있다.

복상기간에는 땅바닥에서 자야하고 침대에서 자서는 아니 되며, 남녀가 동침해서도, 결혼 및 외박을 해서도 아니 되며, 이발과 목욕은 물론, 남의 집에 놀러 다녀서도 아니 된다. 어떤 지방에서는 음식도 가렸는데, 버섯, 龍眼과 우렁이는 먹지 못한다. 버섯은 망자의 귀와 같이 생겼고, 용안은 눈과 같이 생겼으며, 우렁이는 그 모양이 눈물 흐르는 것처럼 보여 슬프고 가슴 아팠기 때문이다. 복상기간이 끝나면 상주들은 상복을 벗고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

복상기간 동안 행하는 의식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① 상복

복상기간 동안 장자는 상복을 입고 외출을 하지 못하며, 그 외의 가족들은 외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 외출할 때에는 상복을 벗어 벽에 걸어놓고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머리엔 두건은 쓰고 나가야 한다. 집안에 있을 때는 상복을 벗지 못한다.

#### ② 식사

아침, 저녁으로 망자의 위패 앞에 식사 상을 차린다. 출상 후 망자는 아

직 조상신의 대열에 끼어 들 수 없기 때문에 집의 한 쪽에 위패를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밥과 찬을 차린다. 식단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평소 가족이 드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 ③ 삼우제-성묘

출상한 날 오후나 그 이튿날 혹은 사흘째 되는 날 망자의 가족들은 제수용품을 준비하여 묘지에 가서 성묘를 한다. 이를 ‘圓墳’이라한다. 이때 무덤의 잘못된 곳을 손질하는데 이것은 극히 상징적이고, 묘 정수리에 가는 막대와 종으로 만든 ‘墓標’를 꼽는다.

### ④ 回魂 의식

많은 장족 거주 지역에서는 장례 후 ‘회혼’의식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 회혼일자는 무당이 뽑는데, 망자의 태어난 시와 사망한 시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장례 후 10여일 또는 수십일 뒤로 정한다.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 회혼의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회혼의식은 먼저 무당을 청하고 소와 돼지, 그리고 양 등을 잡아 제수 음식을 차린 후 묘지에서 지낸다. 현재는 수탉 한 마리나 돼지고기 한 근 정도를 무덤 위에 놓고 지낸다. 제사를 지낸 후 무당이 묘 앞이나 또는 부근에서 망자의 혼령을 영접하여 모셔오는 표시로 나무 하나를 꺾어서 돌아온다. 집에 돌아와서는 무당의 주관 하에 집의 한 옆에 망자가 안주할 위패를 준비한다. 그날 저녁에는 대문 앞에 융숭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혼령을 영접하는데, 상주와 친족 남자들이 상가에서 함께 자면서 대문 앞 길바닥에 재를 뿌리고 망자가 어떠한 혼령으로 변해서 돌아오는지를 살핀다. 무당이 새벽 날이 샌 후 재가 뿌려진 길을 살핀다. 통상적으로 닭, 오리, 개, 말, 소, 양 등의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고, 가끔 사람의 발자국도 발견되곤 한다.<sup>40)</sup> 그날

40) 凌雲縣 일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일체를 가져갈 수 없도록 죽었을 때 눈을 빼서 집안에 남겨둔다. 천당에 도착했을 때 눈이 없이 눈을 감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回家) 때문에 ‘回魂’이 필요하

부터 1일 3찬, 조석으로 봉공한다.

#### ⑤ 탈상

옛날에는 장례 후 3년간 봉공을 한 후 무당을 청하여 날을 받아 제사를 올리고(‘升靈’의식) 위패를 불태운 후 망자의 신위를 한 장의 붉은 종이 위에 써서 조상신의 옆에 붙였다. 이때부터 망자의 혼령은 조상신단의 대열에 동참하기 때문에 따로 봉공할 필요가 없었다. 즉 비로소 탈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일부지역에서는 탈 소상과 탈 대상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 장례 후 42일 째 되는 날 출가한 딸이 찹쌀과 닭을 잡아오고 기타 친척들이 쌀과 돼지고기 등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는 경우이고, 후자는 장례 후 1년이 되는 날 묘지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성묘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靈臺를 불태우는 경우다. 이때도 위패는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회혼’ 뒤에 바로 탈상하고 있다.

#### ⑥ 化衣

망자가 죽은 후 처음 맞는 백중날(음력 7월 보름), 친지들이 탈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망자에게 종이로 만든 집, 물통, 상자, 옷, 가마, 말, 사람 및 돈 등을 태워 주는 것을 ‘化衣’또는 ‘燒衣’라고 부른다. 이들 제물은 본가에서는 물론 근친들이 모두 준비하여 오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음력 7월 12일 또는 13일에 이것들을 불태우기도 한다. 그 때 무당이나 도사를 불러 상가의 대문 밖 노변에 오리고기를 위시한 제물을 차리고 경을 읽은 다음 제물을 태운다. 아직 탈상을 하지 않은 상가는 ‘화의’와 동시에 탈상을 하고 집안에 설치한 망자의 위패를 철거한다. 이때부터 망자의 혼령은 조상신 대열의 일원이 된다.

---

다고 생각한다.

## V. 결 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인 壯族을 대상으로 먼저 그들의 민족적인 연원을 살펴보고, 그들이 처한 자연 및 지리적 환경의 영향아래 형성된 전통적인 상장례 관념과 습속이 타 민족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어온 장족의 전통적인 喪葬禮 習俗인 安葬 방법과 殯葬 절차를 고찰해 보았다.

壯族은 중국 廣西, 廣東지방의 토착민족으로, 현재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다. 모두 1,600만 정도며 대부분 중국의 남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광둥성 連山壯族瑤族自治縣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운남성 文山壯族苗族自治州에 이른다. 남쪽으로는 광서자치구 北部灣에서부터 북쪽의 귀주성 從江縣 일대에 이르는 지역과 서남쪽은 월남과 접하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장족 인구의 99.73%가 이들 지역에 살고 있다. 그 중 광서장족자치구에 1,500여 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장족인구의 93.7%에 달하며, 광서자치구 인구의 33.6%를 점한다. 장족인구의 주요 거주 지역은 농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족의 거주 지역은 시종 중국의 내륙지역과 서남지역이 연결되는 지역 및 서남지역에서 남쪽 바다로 잇는 중요한 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한족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다.

장족의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사람의 죽음은 영혼이 형체를 떠난 결과이며, 사람이 비록 죽더라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여 살아있는 친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신에 대한 처리가 지극히 신중했다. 길한 것을 쫓고 재앙을 피한다는 가치관념 하에 형성된 장족의 상례와 장례의 예속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이익에 중점을 둔 극히 공리주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혼령에 대해 두려워하고, 비위를 맞추고, 경원하며, 심지어 도사나 무당이 귀신에게 빌어 유혹하여 내쫓고 진압하는 것이 고대 장족

상례 의식의 주안점이었다.

그러나 장족은 역사 속에서 한족과 접촉하면서 다방면에서 한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장족은 한족과는 상당히 다른 장례습속을 갖고 있다. 이는 문화와 가치정향이 다른데서 연유한 것이라 보여 진다. 고대 한족의 장례습속은 그 근본이 세상을 떠난 망인을 애도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고대 장족의 장례습속은 그 요지가 趨吉避凶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혼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족은 친족이 사망하면 素食을 하고 3년간 묘소를 지키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장족은 사람이 사망하면 북을 치며 애도하면서도 효지는 슬퍼하지도 곡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수레를 밀고 술을 거나하게 마신 뒤에 시신을 야외로 운반하여 매장했다. 또한 설사 지친의 자녀일지라도 대문 밖에까지 나가서 운구를 보내지는 않았다.

장족을 통치하게 된 한족은 스스로의 가치관념으로 장족의 가치관념을 평가할 때 장족의 가치관념은 인륜에 어긋나며 대역무도 한 것으로 판단, 금지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른다. 송 태종은 982년에 <백성이 상례를 즐기 지내는 것을 금지(禁民喪禮作樂)>하는 칙령을 내렸고, 위반시 당사자를 ‘불효자’라는 이름으로 징벌함은 물론, 소재지 현의 관원들 역시 직무를 유기한 죄로 면직된 것과 같은 것이 그 예다.

17세기 이후 중국은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통치자들이 누차 금령을 내려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 이식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장족의 고유 상례 습속은 전면적으로 한족의 그것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후 장족의 상례습속은 한족의 그것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갔다. 하지만 그 거주 지역에 따라, 특히 지배민족인 외래문화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외래문화, 특히 한족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전통적 습속은 여전히 상당히 보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족의 민장절차에서 볼 수 있는 報喪, 入殮, 入棺, 停柩, 出喪, 守孝 등의 의식은 한족과 상당히 유사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장방법에서 여

전히 잔존하고 있는 屈肢 土葬, 暴尸拾骨 토장, 火化 토장, 二次葬 및 岩洞葬, 五塊骸葬, 水葬, 一次土葬 등 특이한 습속은 한족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그것은 장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생활습속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즉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 고유의 관혼상제 의식, 특히 상장례 습속은 일반적으로 그 민족이 처한 자연환경, 생산방식, 생활습관, 종교 및 신앙, 의식구조 등의 영향을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 <參考文獻>

- 元 脫脫等撰, 《宋史》一 卷125(제1판; 臺北: 鼎文書局), 民國69年.
-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130 <廣東七>(圖書集成局鉛印), 光緒27年中秋二林齋藏版.
- 徐松石, 《粵江流域人民史》(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41.
- 晉 張華, 《博物志》(北京, 中華書局), 1985.
- 田汝成, 《炎徼紀聞》4 (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5.
- 周去非, 《嶠外代答》二 (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5.
- 段成式, 《酉陽雜俎》附續集 (北京, 中華書局), 1985.
- 謝之雄 主編, 《廣西壯族自治區經濟地理》(제1판; 南寧: 新華出版社), 1988.
- 解縉等, 《永樂大典》(北京: 中華書局), 1994.
- 嚴汝嫻·劉宇, 《中國少數民族婚喪風俗》(제1판; 北京: 商務印書館, 1996).
- 張聲震主編, 《壯族通史》上下(제1판; 北京: 民族出版社), 1997.
- 葛劍雄 編, 《中國人口史》5 (제1판;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 方素梅, 《近代壯族社會研究》(제1판; 南寧: 廣西民族出版社), 2002.
- 萬建中, 《圖文中國民俗·喪俗》(北京: 中國旅游出版社), 2004.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編, 《2005中國統計年鑑》(제1판;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5.

- 石奕龍, 《中國民俗通志(喪葬志)》(제1판;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5.
- 覃聖敏, <廣西壯族的喪葬習俗>, 《廣西民族研究》 1989年 4.
- 白耀天, <壯族喪葬禮儀述論>, 《廣西民族研究》, 1993년 제4기.
- 黃浩邦, <大化縣六也鄉壯族喪葬調查>《廣西民族學院學報》, 1997년 12월.
- 龍符, <雲南壯族民間傳統喪葬祭祀習俗>, 《文山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16:3, 2003. 3.
- 郭立新, <榮耀的背后: 廣西龍背壯族喪葬儀式分析>, 《中南民族大學學報》 25:1, 2005. 1.
- 김재원, <중국 광서(廣西)의 소수민족: 장족(壯族)사회 탐방: 깊은 산속 계단 밭 일구며 살아가는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 《민족연구》, 2008.
- 김재원, <중국 광서(廣西)의 소수민족: 중국광서 장족자치구 민족탐구: 광서 장족자치구의 소수민족 개황>, 《민족연구》, 2008.
- 연구원자료, <중국 광서장족민족자치현 소개>, 《민족연구》, 2008.

### <中文提要>

本論文是關於中國壯族的喪葬禮習俗的研究。本文先探討了壯族的民族淵源、居住的自然以及地理環境怎麼影響到他們的喪葬禮觀念和習俗, 然後分析了他們的喪葬禮觀念由於與其他民族交流之后如何演變。最後考察壯族的傳統安葬方式和殯葬程式。

壯族是中國嶺南土著民族, 是現在中國55個少數民族中人口最多的民族, 一共有1,600萬餘人。壯族地區處於中國最南部, 東起今廣東連山壯族瑤族自治縣, 西至今雲南省文山壯族苗族自治州, 南至廣西北部灣, 北達貴州省從江縣, 西南與越南接壤。全壯族人口的99.73%居住在此地區。其中1,500餘萬居住在廣西壯族自治區, 此為全壯族人口的93.7%。壯族人口的主要居住地區是農村。歷史上, 壯族地區一直是內地與西南地區進行聯系及西南地區向南出海的重要通道, 因此不能脫離于漢族的控制。

壯族傳統觀念認為人死是靈魂離開形體的結果，人雖死而靈魂依然存在，而且作用于活着的親屬。因而對尸骸的處理是極其慎重的。趨吉避凶的價值心理作用下形成的壯族喪葬禮儀，是以活着的人的利益為軸心的，功利目的極其明顯。因此，對鬼魂的畏懼、討好、敬而遠之，甚至通過巫祝給鬼魂以迷惑、驅趕和鎮壓，就成了古代壯族喪葬禮儀的主題所在。

壯族和漢族的喪葬禮習俗有很大的差別。統治壯族的漢族人以自己的價值觀念框套衡准壯族的價值觀念，自然覺得壯族的所為悖于情理，大逆不道，下令禁止，比如宋太宗即在982年頒行詔令‘禁民喪禮作樂’。

17世紀以後由于中國封建中央集權制的進一步強化，統治者屢行禁令，大力進行文化植民政策，所以在壯族喪葬沿革史上，從此進入了被漢族文化全面整合的時期。這一時期從總體上來說，壯族的喪葬禮儀逐漸取同于漢族的喪葬禮儀。然而按照居住地區，特別由於支配民族文化影響程度及變化的不同，有的地區雖然也受到外來文化，特別是漢族的影響多，但仍然大部分保存了其傳統習俗。

壯族的殯葬程式，即報喪、入殮、入棺、停柩、出喪、守孝等儀式與漢族相當類似，但安葬方式上仍然殘存的屈肢土葬、暴尸拾骨土葬、火化土葬、二次葬以及岩洞葬、五塊骸葬、水葬、一次土葬等奇特的習俗與漢族差別很大。那可能是受壯族居住地區的環境、生活習慣的影響而來的，即如序頭提到的民族固有的冠婚喪祭儀式，特別喪葬禮習俗是受各族所處的自然環境、生產方式、生活習慣、宗教信仰、意識形態等諸多因素影響而來的。

주제어 : 壯族, 廣西壯族自治區, 喪禮, 葬禮, 安葬方法, 殯葬節次